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

2021. 1.

국 토 교 통 부

1. 개정이유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(법률 제17735호, 2020.12.22. 공포, 2021.06.23. 시행)에 따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,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규정(안 제2조의2 제1항 신설)
- 나. 의견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는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(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준적합성 심사 등)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의견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기준적합성 심사 등) ①</u> <u>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2조</u> <u>제1항에 따라 기준적합성 심사를</u> <u>할 때에는 장애인 등 이동편의</u> <u>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기준적합성</u> <u>심사에 필요한 의견 요청을 받은</u> <u>관련 부서는 법 제10조에 따른</u> <u>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</u> <u>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</u> <u>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</u> <u>받은 대상시설은 기준적합성</u> <u>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u>